

이렇게 생각한다 — 한약관리규정(초안)의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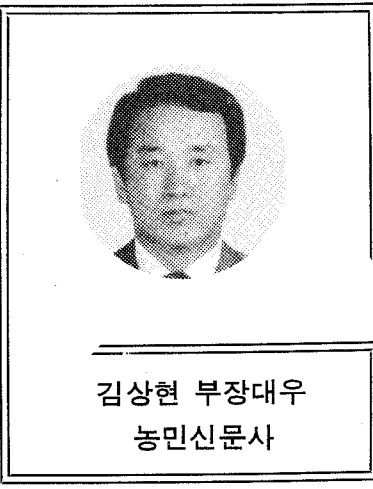
보건사회부(약무정책과)는 지난 8월 18일 한약관리규정(안)을 마련했다. 보사부의 이번 관리규정은 약사법 제32조 제4항 및 제38조(농림수산규칙 제46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)에 따른 것으로, 보사부는 이 초안(案)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 이 규정은 보사부의 의도대로 발효될 경우,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보사부의 관리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. 보사부의 이번 규정은 약사법 제32조 제4항 및 제38조(농림수산규칙 제46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)에 따른 것으로, 보사부는 이 초안(案)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 이 규정은 보사부의 의도대로 발효될 경우,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보사부의 관리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.

생산자증명운운은 탁상행정의 표본

사상(商)은 생약(生藥)의 생산(生産)을 규율(規率)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그러나 보사부의 이번 규정은 생산자(生産者)의 이익을 무시하고,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.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.

보사부의 이번 규정은 약사법 제32조 제4항 및 제38조(농림수산규칙 제46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)에 따른 것으로, 보사부는 이 초안(案)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 이 규정은 보사부의 의도대로 발효될 경우,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보사부의 관리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.

보사부의 이번 규정은 약사법 제32조 제4항 및 제38조(농림수산규칙 제46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)에 따른 것으로, 보사부는 이 초안(案)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 이 규정은 보사부의 의도대로 발효될 경우,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보사부의 관리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.



김상현 부장대우
농민신문사

단순가공 농산물에 불과한 "규격품"을

약사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도 모순

보사부의 이번 규정은 약사법 제32조 제4항 및 제38조(농림수산규칙 제46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)에 따른 것으로, 보사부는 이 초안(案)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 이 규정은 보사부의 의도대로 발효될 경우,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보사부의 관리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.



보사부의 이번 규정은 약사법 제32조 제4항 및 제38조(농림수산규칙 제46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)에 따른 것으로, 보사부는 이 초안(案)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 이 규정은 보사부의 의도대로 발효될 경우,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보사부의 관리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.

규격화작업 농림수산부가 맡는 것이 효율적 한약재수입, 생산자 단체가 물량 총괄해야

보사부의 이번 규정은 약사법 제32조 제4항 및 제38조(농림수산규칙 제46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)에 따른 것으로, 보사부는 이 초안(案)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 이 규정은 보사부의 의도대로 발효될 경우,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보사부의 관리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.

보사부의 이번 규정은 약사법 제32조 제4항 및 제38조(농림수산규칙 제46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)에 따른 것으로, 보사부는 이 초안(案)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 이 규정은 보사부의 의도대로 발효될 경우,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보사부의 관리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.

보사부의 이번 규정은 약사법 제32조 제4항 및 제38조(농림수산규칙 제46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)에 따른 것으로, 보사부는 이 초안(案)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0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 이 규정은 보사부의 의도대로 발효될 경우,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보사부의 관리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.